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담보 설정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김해시, 산청군

내 용

경상남도에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¹⁹⁵⁾ 중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조사업 지원과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5. 3. 3. 개정)」 제

19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1항 [별표 8]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에서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부동산의 중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부동산의 중물이 아닌 기계·장비(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부동산이 아닌 시설 등은 5년. 다만, 유리온실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32조 제1항 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대출취급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5. 3. 2. 이전) 또는 시·도지사(2015. 3. 3. 이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김해시, 산청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업보조 시설물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시설물(3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채권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현황

시·군	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예산 (천원)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근저당 설정자 (설정일자)	장관, 도지사 승인여부	
							승인	미승인
합계		3건	130,600					
김해시 (1개소)	2015	친환경 퇴 비생산시 설현대화	64,000	(주)○○산업	로봇·반자 동래 핑시스 템, 후숙 및 약취방지시설	○○은행 (15.11.24) ○○은행 (16.08.30)	-	○
산청군 (2개소)	2013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7,000	○○○	퇴비사 신축	○○○○축협 (13.12.12)	-	○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9,600	○○○	퇴비사 신축	○○○농협 (14.10.06)	-	○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 산청군수는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부담 담보 재설정, 경상남도지사의 사후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사전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이 채권 담보로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